

학생복지위원회규정

제 정 2018. 2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학생복지시설 운영규정 제4조에서 정한 학생복지위원회(이하 '본 위원회'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구성)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- ① 위원회는 학생복지처장, 총무처장, 학생과장, 학생대표 2인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는 4인 내외의 전임교원으로 조직한다.
- ② 위원장은 학생복지처장으로 한다.
-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선임한다.
- ④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제3조 (운영) 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.

- 1. 학생복지의 전반적인 사항 및 기본방침
- 2. 학생복지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
- 3. 학생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
- 4. 학생식당 및 자판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
- 5. 기타 학생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 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두고 임시회의는 총장과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.

- ② 위원회는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5조 (위원회의 사무) 본 위원회의 사무는 학생복지처에서 관장한다.

제6조 (운영세칙) 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.